#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67

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이병진·문진석·조인철

윤호중 • 김준형 • 신정훈

이건태 • 권칠승 • 임미애

조계원 • 이기헌 • 송옥주

추미애 • 박상혁 • 문대림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7년여간 햇빛도 없는 실내 동물원에 갇혀 지냈던 백사자, 질병을 치료받는 중에도 쇼에 동원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 돌고래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학대 사례는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음.

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허가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면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밀한관리·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주기적 인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·점검하고 부 적절한 운영이 지속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개선 명령을 하도록 하여 동물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 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의2 신 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2(허가의 유효기간)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7년으로 한다. 다만, 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 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-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.
  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갱신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

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10조제1항제1호 중 "허가"를 "허가·갱신허가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2(허가의 유효기간) ① 제
	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
	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
	부터 7년으로 한다. 다만, 허가
	의 유효기간 중에 제8조제4항
	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
	에는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으
	<u>로 한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
	만료된 후 계속하여 동물원 또
	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
	허가권자에게 갱신허가를 받아
	<u>야 한다.</u>
	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
	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
	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
	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
	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
	하여야 한다.
	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
	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 또는
	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
	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

제10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허가 저 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 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<u>허가</u>를 받은 경우

2. ~ 4. (생 략)

②・③ (생 략)

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	민
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	처
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	·된
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	말
한다)이 끝난 다음 날에 갱	<u>신</u>
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.	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	따
른 갱신허가의 기준・절차	등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	통
령령으로 정한다.	
 베10조(허가의 취소 등) ①	
1	
<u>허가·갱신허가</u>	
<u> </u>	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